지방세(취득세 및 등록세)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원의 토지・건물 및 업무용 차량은 구의료보험법상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으로서 소유권자체의 이전(변경)사항이 되지 않으므로 지방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

- 또한 심사평가원의 토지・건물 및 업무용차량에 대한 지방세 과세가 적법한 것이라면 행정자치부 세정13430-122('99.1.27)호와 관련된 유사 사례의 회신내용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

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〕

○ 구 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보험연합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해산되고 동 의료보험연합회의 진료비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물론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은 심사평가원의 재산으로 보는 의제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설립행위성격은 법의 규정에 의한, 즉 일종의 특별법에 의한 단순한 조직변경의 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음.

○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만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으로 보아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고,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합병과 유사한 법인전환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과세대상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나,

- 법인합병의 경우 비과세하는 취지를 유추해석하여 볼 때 심사평가원이 해산된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기존의 재산을 승계받는 것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따른 명의변경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・이전・변경 또는 소멸의 대한 득실사항이 없는 심사평가원의 토지・건물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적법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.

회 신

구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연합회가 별도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모든 재산과 권리・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승계하는 부동산